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을 이 법에 열거하던 것을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이 법에 열거하고 있던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법문을 간결히 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제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대상을 열거하면서 “**헌법재판소재판관등**”¹⁾이라고 약칭하던 것을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1)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로 약칭을 변경 하였으나,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6항³⁾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⁴⁾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명시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개정안에 따른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수정하도록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임.

<표 1> 개정안 제6조제3항의 조문정비내용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u>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u>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국회법</u> 」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	--

2) 현행법 제6조제3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에 따른 재송부 요청 대상 직위를 열거하고 있어 「국회법」과 개별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추가될 때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재송부 요청 대상 직위를 열거하지 않고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을 인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직위가 추가되는 경우 「인사청문회법」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정비하였음.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인사청문회) ①~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인사청문회) ①~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위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
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
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
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
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
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